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9월 8일
-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수요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혜택의 정당성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제13조)
 -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조문 신설(안 제3조제3항)
 -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
 -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시행)에 따라 구의회가 별도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른 규정 정비 및 통합운영 규정 신설,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를 통해서 우리 구(區) 직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안 제2조의 소속공무원의 정의에서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을 삭제함.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안 제13조에 구청과 구의회 양 기관의 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신설함.
- 안 제3조는 후생복지 적용범위 관한 사항으로서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후생복지사업을 신설(△명절 축하 선물 제공(제4항), △예방접종비 지원(제8항))하며, 국가시책사업과 중복되는 후생복지 사항(△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

○ 검토 결과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규정 정비 및 통합운영 규정 신설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대상범위에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을 삭제하는 대신 양 기관 간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규정함.
- 특히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은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짐.

2)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 후생복지운영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규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도 규정이 없는 2개(강서구, 관악구)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절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단서 규정을 포함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우리 구(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공무원, 청원경찰은 「영등포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3)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

- 안 제7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후생 복지사업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율항목 구성 시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명절(설·추석) 축하선물 제공,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모두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정은 유지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여겨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 운영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99 호
----------	---------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수요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사업의 현행하를 통해 복지혜택의 정당성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제13조)
- 나.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조문 신설(안 제3조제3항)
- 다.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
- 라.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8. 7.~8.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선택적”을 각각 “맞춤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결혼”을 “결혼, 명절(설·추석)”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치료비”를 “치료비 및 예방접종비”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선택적”을 “맞춤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 소속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및 그 자녀의 출생·입학 축하선물 제공

5. (생 략)

6.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7. (생 략)

8.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치료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 맞춤형 -----
-----.

② 맞춤형 -----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4. ----- 결혼, 명절
(설·추석)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 치료

비 등 지원

9. · 10.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생 략)

2. 제5조에서 규정한 선택적 복
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신 설>

비 및 예방접종비 -----

9.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 맞춤형 ---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구
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
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
하여 운영할 수 있다.